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과 소득 감소에 따른 노동결정 변화*

진 성 진**

본고는 60세부터 64세까지 중위임금의 2/3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집단을 고령 저임금 근로자라 정의하고 해당 집단의 노동공급을 분석하였다. 고령 저임금 근로자는 성별에 따라 업종과 근로형태,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임금수준이 높았고 여성의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되는 것에 착안하여 61세 연령그룹의 노동참여 결정이 소득 감소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61세 남성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감소에 따라 저임금 근로를 약 1%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남성의 저임금 근로가 소득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서 론

본고에서는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1) 노동공급 현황과 (2) 소득 감소가 노동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높은 연령의 사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단어로 고령자, 노인, 장년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고령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그 의미를 60~64세로 정의한다. 그리고 해당 연령의 근로자 중 전체 중위 월임금 2/3 이하의 월임금을 받는 집단을 고령 저임금 근로자라 통칭한다. 해당 집단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연령의 측면에서 봤을 때 60세에서 64세까지 연령집단은 소득단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질적으로 정년을 넘겼을 60세를 시작점으로 두고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¹⁾ 등 노인에 대한 대규모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는 65세 이상이 제외되도록 64세를 끝점

* 이 글은 진성진 외(2022),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공급 분석』(한국노동연구원)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seongjin@kli.re.kr).

1)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도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사업과 사회서비스형의 일부분에 참

으로 두었다. 즉, 해당 연령집단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정년 퇴직을 겪는 나이이면서 동시에 노인에게 대한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참여는 고령자의 소득단절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대상이 된다.

둘째, 저임금 근로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1) 고령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2) 고령자 노동시장은 다른 연령대의 노동시장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므로(성역할의 분리, 업종의 제한 등)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1>은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2020년 고령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33.2%로, 고령 임금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저임금 근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인 20.3%를 10%p 이상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60세에서 64세의 임금수준이 다른 연령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돼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

(단위: %, 천 원/월)

		2018	2019	2020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전체	21.1	20.1	20.3
	남성	14.9	14.5	14.2
	여성	29.6	27.7	28.6
고령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전체	33.6	33.0	33.2
	남성	23.5	23.4	23.1
	여성	48.4	46.8	48.1
중위임금		2,360	2,476	2,500
저임금 기준		1,574	1,651	1,667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8-2020).

셋째, 고령 저임금 근로자는 노년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낮은 임금을 받는 집단으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집단이다. 이승호·이원진·김수영(2020)은 50대와 60대의 노동궤적 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이행으로 인한 소득 수준 하락과 빈곤을 증가를 막는 데 도움

여할 수 있고, 공익활동에도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한해 참여가능하지만(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 64세 미만 고령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약 5% 정도(전체 77만여 명 중 3만 8천여 명)의 비중만을 차지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동향).

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 노동시장 활성화, 계속 고용,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지속해서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중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을 고용형태, 업종분포, 근로조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Ⅲ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감소가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추정한다. 2018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앞으로 국민연금이라 통칭) 수급개시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2018년부터 수급받지 못하게 된 61세 연령집단의 노동참여 결정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Ⅱ. 고령 저임금 근로자 현황

1.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성별 임금 분포

먼저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자.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령자’는 60~64세 연령집단으로 정의하였다. 60세부터 64세의 고령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3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5세부터 69세까지의 인구가 약 280만여 명인 것을 볼 때, 5세 단위의 인구 집단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선두에 있는 1956년생부터 1960년생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고령 연령집단의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준다. 임금근

〈표 2〉 2020년 고령자(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현황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총 인구수	51,829,023	25,841,029	25,987,994
고령(60~64세) 인구수	3,950,469	1,953,296	1,997,173
고령자(60~64세) 비율	7.6%	7.6%	7.7%

주: 인구수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됨, 단, 외국인은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로자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수의 합은 약 140만 명으로 연령그룹 전체의 인구수 380만여 명²⁾의 36%를 차지한다. 55세 이상 59세 이하의 경제활동상태와 비교해 봤을 때, 고령 연령그룹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적고(20% vs 43%)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크다(37% vs 9%). 이는 60세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통해 주로 상용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 2020년 60~64세와 55~59세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단위 : 명, %)

				전체		남성		여성		
60~64세 연령 집단	취 업 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779,029	20%	479,826	25%	299,204	15%	
			임시근로자	428,669	11%	168,919	9%	259,749	13%	
			일용근로자	191,696	5%	124,261	7%	67,435	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8,377	4%	98,984	5%	49,393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27,548	16%	465,890	25%	161,657	8%
		무급가족종사자			167,647	4%	13,327	1%	154,321	8%
		실업자			63,514	2%	39,477	2%	24,038	1%
		비경제활동인구			1,431,045	37%	496,914	26%	934,131	48%
		전체			3,837,525	100%	1,887,597	100%	1,949,928	100%
55~59세 연령 집단	취 업 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468,060	43%	899,270	34%	568,790	23%	
			임시근로자	404,585	12%	133,729	5%	270,857	11%	
			일용근로자	215,493	6%	157,888	6%	57,605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19,914	7%	161,559	6%	58,354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72,890	17%	408,672	16%	164,218	7%
		무급가족종사자			170,128	5%	19,675	1%	150,453	6%
		실업자			38,437	1%	35,609	1%	74,046	3%
		비경제활동인구			292,672	9%	798,438	31%	1,091,109	45%
		전체			3,382,179	100%	2,614,840	100%	2,435,433	100%

자료 : 통계청,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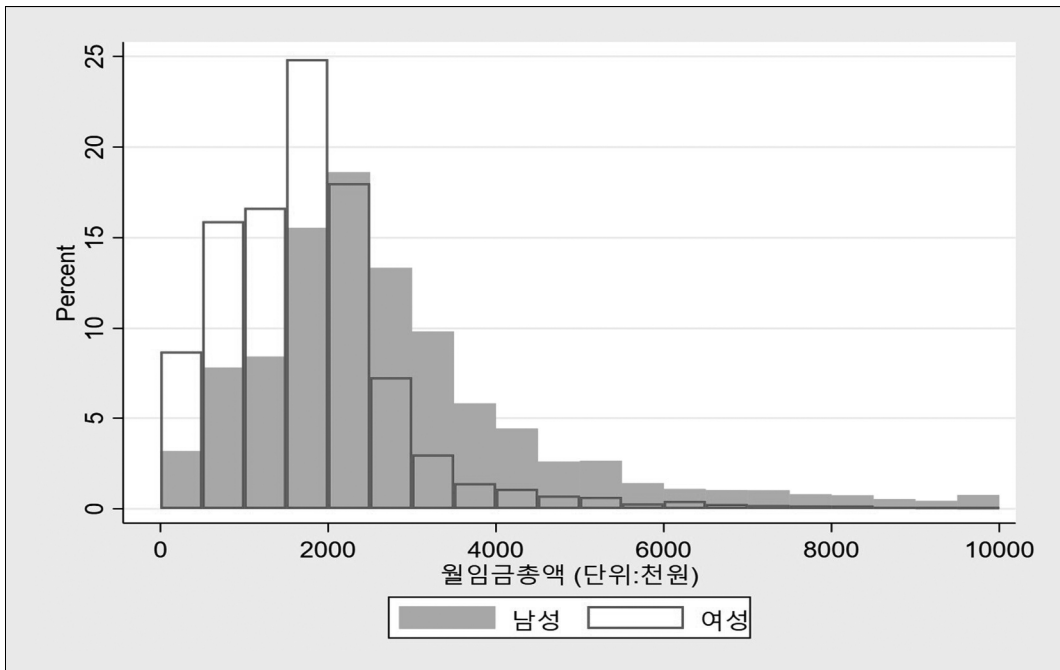
다음은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성별 차이를 고령 연령집단 내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임금 분포를 통해 알아보자. 〈표 1〉은 고령 연령집단 내 임금근로자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같은 고령 연령집단이라도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48.1%,

2)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간의 차이가 15만 명 정도 있다.

2020년 기준이 남성(23.1%)에 비해 높다. 그리고 고령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28.6%)과 비교해 보더라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고령 근로자의 저임금 비율이 높은 현상은 임금 분포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2020년 고령 임금노동자의 임금 분포를 보여준다. 저임금의 기준인 166만 7천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준 아래로 더 많은 임금근로자가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 2020년 고령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분포



자료 :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0)로부터 저자 작성.

2.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조건

이 절에서는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을 (1) 업종분포, 사업체규모, 고용형태 등 일자리의 특징과 (2) 임금,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어떤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지 <표 4>를 통해 알아보자. 전체적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10% 이상으로 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분포는 성별로 나누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성 고령 저임금 근로자는 건설업(38.4%)과 운수업(14.9%)에 50%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 제조업과 사업

시설관리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각각 5% 정도 분포되어 있다. 반면 여성 고령 저임금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고 (30.9%), 그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9.7%), 도매 및 소매업(11.7%)에 분포되어 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회지원 서비스업에도 각각 5% 이상 분포되어 있다. 60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업종 분포와 비교해 보면 고령 저임금 근로자가 성별에 따라 특정 업종의 쏠림이 더 뚜렷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업종 차이는 고령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측과 공급측 모두 성별에 따른 노동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령 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성별로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표 4〉 2020년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업종 분포

(단위: %)

9차 산업대분류	고령(60~64) 저임금 근로자			60세 미만 저임금 근로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A 농업, 임업 및 어업	0.39	0.49	0.32	0.15	0.23	0.11
B 광업	0.03	0.06	0.00	0.01	0.03	0.00
C 제조업	7.75	7.57	7.88	7.73	9.15	6.8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2	0.02	0.01	0.02	0.02	0.01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2	0.40	0.10	0.14	0.27	0.06
F 건설업	17.34	38.43	2.50	12.27	28.11	2.19
G 도매 및 소매업	9.68	6.84	11.68	15.20	12.36	17.01
H 운수업	6.55	14.87	0.70	3.14	6.86	0.77
I 숙박 및 음식점업	13.08	3.72	19.65	22.03	16.39	25.6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35	0.56	0.20	0.73	0.83	0.67
K 금융 및 보험업	2.64	1.39	3.53	2.79	1.86	3.38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57	2.35	7.84	1.25	0.77	1.55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1	2.46	0.51	1.30	1.41	1.23
N 사업시설관리 및 사회지원 서비스업	5.85	5.82	5.88	4.85	4.76	4.91
P 교육 서비스업	3.65	4.52	3.04	9.47	7.10	10.9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31	5.22	30.92	10.96	1.91	16.7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8	0.91	1.37	3.19	3.35	3.0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7	4.37	3.87	4.76	4.59	4.87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0).

다. 남성과 여성 모두 75%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는 1% 정도로 드물게 근무하고 있다.

〈표 6〉은 고령 저임금 근로자가 어떤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남성은 일일근로(일용직)와 정규직, 단시간 형태로 일하는 반면, 여성은 단시간 근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정규직과 일일근로가 주를 이루었다. 고령이 아닌 60세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형태 또

〈표 5〉 2020년 고령 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 규모

(단위: %)

	고령(60~64) 저임금 근로자			일반(60세 미만) 저임금 근로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5인 미만	50.01	45.22	53.38	59.75	54.02	63.39
5인 이상 29인 이하	28.58	33.11	25.39	25.41	28.49	23.45
30인 이상 299인 이하	20.08	20.14	20.04	12.08	14.42	10.60
300인 이상	1.33	1.54	1.19	2.76	3.06	2.56
총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0).

〈표 6〉 2020년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형태

(단위: %)

	고령(60~64) 저임금 근로자			일반(60세 미만) 저임금 근로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특수형태	8.11	5.13	10.20	11.77	7.70	14.35
재택/가내	0.15	0.11	0.17	0.16	0.08	0.22
파견	0.17	0.02	0.27	0.25	0.18	0.30
용역	4.72	2.16	6.53	1.32	1.16	1.43
일일	25.31	40.21	14.83	22.11	38.05	11.96
단시간	31.49	17.35	41.43	37.39	25.84	44.73
기간제	4.67	4.06	5.09	4.86	4.38	5.16
기간제 아닌 한시적	2.37	1.22	3.18	2.32	1.99	2.52
정규직	23.02	29.74	18.29	19.83	20.62	19.33
총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특수형태근로자 -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에 있음.

일일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음.

단시간 근로자 - 통상근로자(사업체 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0).

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남성의 일일 고용형태는 주로 건설업에서 나타났고 여성의 단시간 근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자. 월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 모두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여성이 더 많은데, 특히 근로일수가 더 많았다. 근로일수에 비해 근로시간은 여성과 비슷한 점, 시간당 임금총액이 높은 점, 그리고 건설업 일용직이 남성의 상당수를 차지함을 미루어 봤을 때 일용직이 많은 남성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7〉 2020년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근로일수, 근로시간

	고령(60~64) 저임금 근로자			일반(60세 미만) 저임금 근로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월 임금 총액 (천 원/월)	988.0	1005.1	975.3	914.7	903.7	922.3
시간당 임금 총액 (천 원/시간)	13.6	16.2	11.7	13.1	15.1	11.7
근로일수 (일/월)	16.4	13.5	18.5	14.7	12.2	16.4
근로시간 (시간/월)	87.9	82.5	91.8	82.1	74.0	87.6

주 : 근로시간은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실근로시간, 휴일실근로시간의 합임.

근로일수는 소정근로일수와 초과실근로일수 그리고 휴일실근로일수의 합임.

자료 :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0).

Ⅲ. 소득감소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2018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61세 연령그룹의 소득감소가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한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앞으로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지칭함)의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 집단에 따라 1952년생 이전 60세에서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최근 수급개시연령의 변경이 일어난 시기는 2018년으로, 61세에서 62세로의 상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해 오던 61세 연령집단이 2018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해당 연령집단의 고정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서 노동공급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의 감소가 고령자, 특히 고령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노동공급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고령자가 보조금이나 연금소득의 유무에 따라 노동공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간접적으로 파

약할 수 있는 정책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이 장에서는 먼저 분석 방법인 이중차분법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 결과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1. 분석 방법 : 이중차분법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은 인과적 정책효과를 추정할 때 널리 쓰이는 방법론이다. 이중차분법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처치집단(treated group)으로 두고 이 집단의 결과변수(outcome variable)에 대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control group)과 처치 전후, 그리고 집단간 차이를 계산하여 이를 정책효과로 정의한다. 이를 정책효과로 보기 위해선 처치가 없을 경우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변수 차이가 일정하다는 가정, 즉 평행추세 가정(parallel trend assumption)이 필요하다.

이를 61세 연령집단의 국민연금 수급연령상한에 따른 소득 감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처치(treatment)는 2018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2세로 높아지면서 61세 연령집단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정의한다. 처치집단(treated group)은 매 시기의 61세 연령집단이며, 결과변수(outcome variable)로는 임금근로여부(근로함 1, 근로안함 0)와 저임금근로여부(저임금 근로함 1, 저임금 근로안함 0) 두 가지를 살펴본다. 비교집단(control group)은 시기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급 가능연령에 속하는 고령자인 62~64세 연령집단으로 정했다.

수급연령 상향조정이라는 처치로 인해 61세 연령그룹의 국민연금 수급률과 국민연금 평균

〈표 8〉 출생년도 집단과 연도에 따른 수급연령

출생년도 집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급개시연령 61세	1953년생	61	62	63	64	65	66	67	68	69
	1954년생	60	61	62	63	64	65	66	67	68
	1955년생	59	60	61	62	63	64	65	66	67
	1956년생	58	59	60	61	62	63	64	65	66
수급개시연령 62세	1957년생	57	58	59	60	61	62	63	64	65
	1958년생	56	57	58	59	60	61	62	63	64
	1959년생	55	56	57	58	59	60	61	62	63
	1960년생	54	55	56	57	58	59	60	61	62
수급개시연령 63세	1961년생	53	54	55	56	57	58	59	60	61
	1962년생	52	53	54	55	56	57	58	59	60

주 : 국민연금 수급가능연령에 해당되는 시기는 짙은 색으로 표시하였음.

각 연도의 61세에 해당하는 출생년도 집단의 통계량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자료 :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수급액은 크게 변동되었다. <표 8>은 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준다. 2018년부터 수급개시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9>는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준다. 2017년에는 61세 연령그룹과 62세 연령그룹의 수급률 차이가 3%p였던 반면 (38.96%-36%), 2018년에는 61세 수급개시연령 제외와 함께 수급률 차이가 24%p로 (46.06%-21.99%) 대폭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표 10>의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급액에서도 2017년 61세와 62세의 차이 -3만 원에서 (30.8-33.2) 2018년 17만 원으로 (38.5-21.1) 대폭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표 9> 출생년도와 연도에 따른 연금 수급률

출생년도 집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953년생	0.3130	0.3745	0.4133	0.5389	0.7449	0.8116	0.8365
1954년생	0.1929	0.3015	0.3811	0.4612	0.5603	0.7783	0.8379
1955년생	0.1255	0.1963	0.3409	0.3896	0.5063	0.6160	0.7935
1956년생	0.0848	0.1254	0.2174	0.3600	0.4606	0.5397	0.6180
1957년생	0.0697	0.0753	0.1136	0.1596	0.2199	0.4236	0.5280
1958년생	0.0450	0.0447	0.0692	0.0985	0.1605	0.2360	0.4709
1959년생	0.0263	0.0334	0.0563	0.0669	0.0926	0.1464	0.2539
1960년생	0.0083	0.0263	0.0360	0.0462	0.0506	0.0858	0.1279

주: 국민연금 수급가능연령에 해당되는 시기는 짙은 색으로 표시하였음.

각 연도의 61세에 해당하는 출생년도 집단의 통계량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고령층 부가조사(2015-2021).

<표 10> 출생년도와 연도에 따른 월평균 연금 수령액

(단위: 만 원)

출생년도 집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953년생	23.8	28.6	31.8	40.5	53.0	54.3	54.8
1954년생	18.7	23.8	31.2	38.4	44.3	50.1	52.5
1955년생	12.0	15.5	24.7	30.8	39.3	40.1	51.3
1956년생	7.4	11.0	19.0	33.2	38.5	43.8	44.0
1957년생	6.6	7.5	11.3	14.7	21.1	36.9	41.8
1958년생	5.0	5.6	7.1	11.7	18.0	23.3	37.4
1959년생	2.5	4.3	6.5	6.0	9.3	16.0	24.3
1960년생	1.1	2.3	2.0	4.9	4.5	6.7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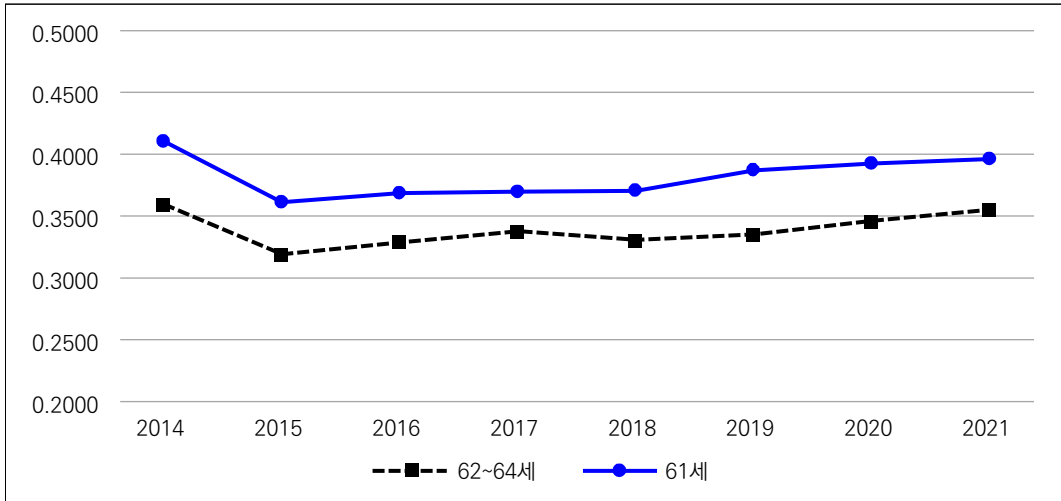
주: 국민연금 수급가능연령에 해당되는 시기는 짙은 색으로 표시하였음.

각 연도의 61세에 해당하는 출생년도 집단의 통계량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고령층 부가조사(20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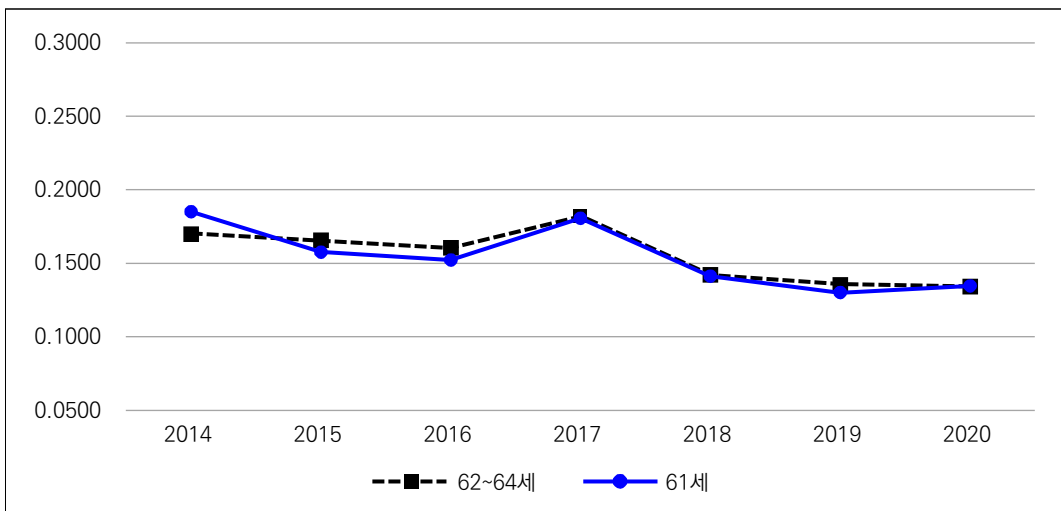
분석 결과에 대해 논하기 전에, 처치 전 평행가설이 유효한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예시에 대입해 보면, 홍길동과 전우치의 국어성적이 여름방학 전에 계속 10점 차이로 일정했는지 확인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에 따르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결과변수의 차이가 처치시점 전인 2014~2017년에 일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임금근로 여부 추세 비교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4~2021).

[그림 3]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저임금 근로 여부 추세 비교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4~2021).

2. 분석 결과

분석결과를 처치집단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61세 연령집단 전체를 처치 집단으로 설정한 경우와 (2) 61세 남성만 처치집단으로 본 경우, 그리고 (3) 61세 여성만 처치집단으로 본 경우이다. <표 9>에 따르면 처치(국민연금 수급연령상향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61세 남성의 저임금근로 비중을 1%p 증가시켰고, 다른 처치집단의 결과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올라가면서 소득이 감소한 61세 남성은 저임금 근로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응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p의 효과 크기는 61세 남성 100명 중 한 명이 국민연금 수급연령상향에 따른 소득감소에 반응하여 저임금 근로에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령자 중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 감소에 선제적으로 반응한다고도 볼 수 있다.

<표 11>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처치집단 : 61세 전체		처치집단 : 61세 남성		처치집단 : 61세 여성	
	임금근로	저임금근로	임금근로	저임금근로	임금근로	저임금근로
추정된 인과효과 (처치 전후, 집단간 이중차분)	0.00475	-0.00024	0.0131	0.0106*	-0.00198	-0.0109
표준오차	(0.0065)	(0.0056)	(0.0094)	(0.0064)	(0.0090)	(0.0088)
관측 수	229566	147101	61175 ³⁾	192599	22772	22898 ⁴⁾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4~2021).

IV. 결론

본고는 60~64세 임금근로자 중 전체 중위임금의 2/3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집단을 고령 저임금 근로자라 정의하고 이들의 노동공급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별로 뚜렷하게 나뉜 고령자 노동 시장을 감안하여 성별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공급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통한 소득 감소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II장에서는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해

- 3) 임금의 관측수가 근로시간에 비해 훨씬 적는데, 이는 임금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 결측이 있기 때문이다.
- 4) 저임금 근로의 임금이 근로시간 대비 결측이 없는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 자체가 임금수준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다.

보았다. 고령 저임금 근로자는 종사하는 업종이 성별에 따라 확연하게 다르고(남성은 주로 건설업, 운수업, 여성은 사회서비스, 음식 및 숙박, 도·소매업), 이러한 업종의 차이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임금,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의 차이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은 남성이 높았으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여성이 더 많았다.

제Ⅲ장은 소득 감소에 대해 고령자의 저임금 일자리 노동공급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분석하였다. 2018년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되면서 그 전에는 국민연금을 수급했던 61세 연령그룹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활용하여, 소득 감소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남성의 저임금 근로 참여가 늘어났음이 추정되었다. 즉, 소득 감소에 대해 남성 저임금 근로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고령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남성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⁵⁾ 소득 감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소득단절에 따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고려한다면 고령 남성의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6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집단은 정년이 끝남과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단계적 상향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음과 동시에 기초연금의 수혜 연령(65세 이상)에서도 제외되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고령 저임금 근로를 장려하는 것은 차선책일 뿐, 이 연령집단이 겪는 소득단절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등의 노동정책의 조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1) 당장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이 어렵고 (2)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내리기도 어려우며 (3) 남성에 한해서였지만 소득의 감소에 대한 반응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노동공급을 늘린다는 분석 결과가 있으므로, 대안적이거나 근로장려금 등을 통해 고령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11]**

[참고문헌]

- 이승호·이원진·김수영(2020), 『고령 노동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진성진·오지영(2022),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공급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5) 본고의 바탕이 된 연구보고서에서 고령 저임금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남성 3,400만 원, 여성 4,200만 원)과 자산수준(남성 3.3억 원, 여성 3.6억 원), 거주유형(자가비율 - 남성 64%, 여성 84%) 등을 고령화연구패널(2020)로 살펴본 결과 남성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 근거하였다.